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4월 15일에서 2022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21명(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및 고용센터의 초기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22명(7급 14명, 8급 8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모성보호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과 고용안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보건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

며,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2호 중 “원·하청”을 “원도급·하도급”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항제18호 중 “지역 및 산업별단체”를 “지역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산업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제6조의3제7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제14조제6항제2호 중 “수발·심사·발간”을 “접수·발송·심사·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수발·심사·발간”을 “접수·발송·심사·발간”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8명(7급 8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28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

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8월 31일”을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6,514”를 “6,587”로 하고, 일반직 계 “6,514”를 “6,587”로 하며, 행정주사 “1,026”을 “1,032”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55”를 “158”로, 행정주사보 “1,177”을 “1,189”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94”를 “406”으로, 직업상담주사보 “22”를 “36”으로, 행정서기 “406”을 “409”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2”을 “632”로, 직업상담서기 “231”을 “239”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64”를 “869”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과명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성동광진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

	과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강북성북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김포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구리고용센터, 남양주고용센터, 동두천고용센터, 양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파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하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광명고용센터, 의왕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오산고용센터, 안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

	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속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양산고용센터, 밀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거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달성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경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문경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

	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부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해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옥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아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제천고용센터, 음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별표 11 중 총계 “6,496”을 “6,577”로 하고, 일반직 계 “6,496”을 “6,577”로 하며, 행정주사 “866”을 “872”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55”를 “158”로, 행정주사보 “1,076”을 “1,088”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94”를 “406”으로, 직업상담주사보 “22”를 “36”으로, 간호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504”를 “507”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2”을 “632”로, 직업상담서기 “221”을 “229”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64”를 “869”로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에 11)부터 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민내일배움카드(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2)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3)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급 14명, 8급 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9 중 “(존속기한 : 2021년 4월 15일)”을 “(존속기한 : 2022년 10월 15일)”로 한다.

별표 20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8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12일까지)

총계	50
일반직 계	50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12
행정서기 또는 직업서기	2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서기보	16

8. 제28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12일까지)

총계	53
일반직 계	53
행정주사 · 직업상담주사	7
행정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8

행정서기 · 직업상담서기	15
행정서기보 · 직업상담서기보	23
9. 제28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12일까지)	
총계	29
일반직 계	2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0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간호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8명)은 2024년 4월 12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⑦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원·하청</u> 및 세대 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2. <u>원도급·하도급</u> ----- -----
13. ~ 20. (생략)	13. ~ 20. (현행과 같음)
⑨ ~ ⑱ (생략)	⑨ ~ ⑱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④ (생략)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 17. 삭제	
18. 근로자단체 또는 <u>지역 및 산업별단체</u> 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 ----- <u>지역별단체</u> -----
18의2. ~ 19. (생략)	18의2. ~ 19. (현행과 같음)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 25. 삭제	
<u><신설></u>	<u>26. 산업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u>

	<u>사업 참여 촉진</u>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u>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u>	<u><삭 제></u>
9. ~ 24. (생 략)	9. ~ 24. (현행과 같음)
⑧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u>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⑤ (생 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록물의 <u>수발·심사·발간</u> 및 보존	2. ----- <u>접수·발송·심사·발간</u> ----- --
3. ~ 21. (생 략)	3. ~ 21. (현행과 같음)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⑦ ----- -----. ----- -----

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u>감안하여</u>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 <u>고려하여</u> ----- -----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록물의 <u>수발·심사·발간</u> 및 보존	2. ----- <u>접수·발송·심사·발간</u>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② ----- -----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 며, 별표 11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있고, 8 명(7급 8명)은 임기제 공무원으 로 임용한다.
③ ~ ⑥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 ⑦ (생 략) <u><신 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한시정원) ① ~ ⑦ (현행 과 같음) ⑧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u><신 설></u>	⑨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u><신 설></u>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 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 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 서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514</u>	<u>6,587</u>	+73
일반직 계	<u>6,514</u>	<u>6,587</u>	+73
·	·	·	
·	·	·	
행정주사	<u>1,026</u>	<u>1,032</u>	+6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55</u>	<u>158</u>	+3
·	·	·	
·	·	·	
행정주사보	<u>1,177</u>	<u>1,189</u>	+12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394</u>	<u>406</u>	+12
직업상담주사보	<u>22</u>	<u>36</u>	+14
·	·	·	
·	·	·	
행정서기	<u>406</u>	<u>409</u>	+3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22</u>	<u>632</u>	+10
직업상담서기	<u>231</u>	<u>239</u>	+8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64</u>	<u>869</u>	+5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496</u>	<u>6,577</u>	+81
일반직 계	<u>6,496</u>	<u>6,577</u>	+81
·	·	·	
·	·	·	
행정주사	<u>866</u>	<u>872</u>	+6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55</u>	<u>158</u>	+3
·	·	·	
·	·	·	
행정주사보	<u>1,076</u>	<u>1,088</u>	+12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 주사보	<u>394</u>	<u>406</u>	+12
직업상담주사보	<u>22</u>	<u>36</u>	+14
·	·	·	
·	·	·	
간호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신설>	<u>8</u>	+8
·	·	·	
·	·	·	
행정서기	<u>504</u>	<u>507</u>	+3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	<u>622</u>	<u>632</u>	+10

기			
직업상담서기	<u>221</u>	<u>229</u>	+8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 서기보	<u>864</u>	<u>869</u>	+5
·	·	·	
·	·	·	